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42

발의연월일: 2025. 4. 2.

발 의 자:김미애・이종욱・강선영

김장겸 • 박상웅 • 서천호

박준태 · 최수진 · 김민전

배현진 · 김기현 · 유용원

박충권 · 송언석 · 박대출

조은희 • 이만희 • 서명옥

김소희 · 임종득 · 조정훈

박성훈 • 이종배 • 강민국

김대식 · 추경호 · 송석준

한기호 • 이철규 의위

(2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,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.

또한,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.

이에,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,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(안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"3년이 경과한"을 "국내 체류기간이 10년이 경과한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 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 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선거권) ① (생 략)	제15조(선거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	2
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	
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	
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	
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	
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	3
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	
후 <u>3년이 경과한</u> 외국인으로	국내 체류기간이 10년이
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	<u> 경과한</u>
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	
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	
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그 외국</u>
	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
	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
	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
	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
	<u>다.</u>